#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117** 

제출연월일 : 2024년 8월12일

제 출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 1. 제안이유

가. 다문화학생, 특히 중도입국·외국인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이라 함) 증가율이 높아<sup>1)</sup> 한국어 교육 지원 강화 요구가 커짐

- 나. 의사소통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고 단위 학교의 관련 업무 부담 경감과 교육과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 하기 위해 이주배경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 교육을 학교 편·입학 초기 단계에 제공할 필요 있음
- 다. 이주배경학생 한국어 및 학교생활적응 교육을 안정적 시스템을 갖춘 한국어교육 전문 교육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교육청이 성과를 관리하고 체계적인 지원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를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조례」 제7조(위탁형 한국어 예비학교), 11조의2(사업의 위탁)

<sup>1)</sup> 연도별 다문화학생수(2014~2023), 교육통계서비스(KESS, 한국교육개발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7조(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 ①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을 집중 지원하는 위탁형 한국어예비학교 (이하 "한국어예비학교"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③교육감은 제1항의 한국어에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의2(사업의 위탁)
- ①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센터 및 다문화교육 사업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 ②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 추진 필요성

- (국가적)이주배경학생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 전면 강화"(교육부, 2023.9.2))
- (사회적)다문화사회 진입 대비 이주배경학생 지원대책 강화
- (전문적)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이주배경학생 입학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지원 체계 강화
- (현장요구)학교생활적응을 위해 입학 초기 한국어 집중 교육 필요

# 현장 의견

- ▶현장 의견: 학교 입학 초기 한국어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 교육 강화 필요
- (분리 기간 최소화) 특정 국가 학생들 중심의 모국어 사용 현상 심화로 장기간 위탁보다 단기간 집중 교육하는 것이 한국어 사용능력 향상과 재적교 복귀 후 학교생활적응 과정에 도움이 됨
- (접근성 고려) 초·중·고 학생 특성상 안전한 등하교가 가능한 거리에 위치

## 실태 조사

- ▶이주배경학생 교육 관련 가장 힘든점 (조사 기간: 2024. 5. 20.~5. 24.)
  - ①의사소통(한국어 부족) > ②교육지원인력 부족 > ③학부모와의 소통 > ④학습지도 > ⑤심리정서 불안 > ⑥통계 파악 어려움 > ⑦기타
-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 전반
  - 학교 운영·관리 등에 관한 모든 사항(교육과정 기획·운영, 교재 및 자료 구입, 예산 집행 등 학교 운영 전반)
  - 교육활동 기록(출결, 과정중심평가 등) 송부,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재적교 학사일정 안내 등 개별 학생 관리

<sup>2) 2) 「2023~2027</sup>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다문화교육 중장기 계획, 교육부, 2023. 9.)

- 한국어교육, 학교생활적응교육, 진로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외부 강사 채용 및 강사료 지급, 멘토링 연계에 관한 사항
- 생활지도 및 폭력예방, 안전교육,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행사 중 사고 발생시 대책 및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회계 처리 및 기타 교육청이 지정하는 사항 등
- 라. 민간위탁 기간: 2025. 3. ~ 2027. 2. (2년)
-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 모집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 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지침」 준용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9명 이내
  - 공모후 접수된 제안서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 선정
- 바. 예산 규모: 금800,000천원(금팔억원)
  - 연간 운영 기관 수: 2개 기관 예정
  - 산출 근거: 2억×2기관×2년=8억
  - 1기관 기준 추계액: 금199,432,0000원(금일억구천구백사십삼만이천원)\*
- ※ 1개 기관(1년 운영 기준)의 추계액은 한국어 예비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보조(「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예산 지원 기준 참고), 강사수당, 학급 운영비, 급식비 지원, 시설관리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한국어예비학교」 운영 예정원가조사보고서에 근거함

## 3. 참고사항

가. (별첨1) 서울형 한국어 예비학교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민주시민생활교육과-16415, 2024. 7. 29.)

## 나. 관계 법령

- 0 「서울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7조, 제11조의 2
- 0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